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21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중원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9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7. 31.접수 제188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5,085,833원 및 그 중 2,890,903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1272).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7. 1.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리금 합계 17,398,541원[= 원금 2,890,903원 + 이자 14,507,638원]이다.

나. D은 2020. 7. 1.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99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7. 31. 접수 제188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앞서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함으로써 D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다가 D 등에게 상속된 것인데, 망 E는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E의 뜻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사해행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전득자 자신에게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그리고 D과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